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382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박해철 · 이용우 · 이학영  
김주영 · 송옥주 · 권칠승  
박홍배 · 안호영 · 김정호  
박 정 · 김태선 · 최혁진  
임미애 의원(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 경쟁력 · 삶의 질 · 저출생 대응 측면에서 노동시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장시간 노동은 단지 개인의 피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 · 산업안전 ·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음.

실노동시간은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량 · 인력운영 방식, 회의 · 보고 관행, 휴가 사용의 제약, 퇴근 후 연락 · 지시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 · 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 세제 · 기술 ·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 실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지자체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사용자의 노력을 지원하며 재원 조성·여건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

### 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상호 협력 등(안 제4조)

근로자·사업주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도록 상호 협력하고,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근로시간의 적정 관리, 휴가 사용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도록 함.

### 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5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 및 국가와 지방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라.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실근로시간 현황·전망, 정책 기본방향·주요 시책, 생산성 향상, 지원, 직전 계획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하도록 함.

마.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실근로시간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대상·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사업주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근무체계 개선·휴식 보장)(안 제8조)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 시작·종료시간 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ICT 기반 원격근무 등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신청 절차·교육·인식 제고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며,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 등 휴식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 저해 관행 개선 및 장기휴가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사.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안 제9조)

국가·지자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 대해 비용 지원, 세제·재정 지원, 설비·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민간단체 활동 지원(안 제10조)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비용 보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정보제공·상담 및 교육(안 제11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동향·전망·지원체계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근로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제공·상담·교육을 위

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차. 조사·연구 등(안 제12조)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포상 등 및 평가결과 반영 요구(안 제13조)

실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사업주 등에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타. 전문기관 지정(안 제14조)

자료 수집·조사, 종합계획 수립·홍보 및 추진성과 평가 지원, 지원 대상 기업 발굴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파.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5조)

고용노동부장관 권한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업무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 및 휴식 보장을 통한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과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①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자와 사용

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자와 사업주의 상호 협력 등) ① 근로자와 사업주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의 휴가를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할 때 건강 유지, 자녀 양육, 가족 간병 등 특히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근로시간의 현황과 전망
2.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
3. 생산성 향상과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4. 실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지원
5.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 및 지원

제8조(사업주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 절차,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2.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다만,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등 휴가 사용을 저해하는 사업장 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 휴가의 촉진, 휴가의 분할 사용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설비·기술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동향·전망·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실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사업주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홍보 및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기업 발굴
3. 그 밖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종합 계획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